

보건진료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보건법 제3조, 의료법 제35조, 학칙 제6조1항36호에 따라 설치하는 가천대학교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가천대학교 보건진료소(이하“보건진료소”라 한다)는 학생 및 교직원 등(이하“가천대학교 구성원”이라 한다)의 건강관리와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제2조의2(소장)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두되,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조직)① 보건진료소 산하에 부속한의원 및 보건실, 행정실 등(이하 “각 부서”라 한다)을 두며 메디컬캠퍼스에는 보건실(분소)를 둔다.

② 가천대학교 구성원의 진료 및 처치와 질병의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한 직장 부속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서, 의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행정실은 보안·관인관수·서무·회계, 그 밖에 보건진료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실 이외의 각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4조(진료의사 등)①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두되, 가천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의사 중에서 병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

② 보건진료소에 간호직과 그 밖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(이하“직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③ 보건진료소의 진료에 필요한 때에는 촉탁 의사를 둘 수 있으며, 한의사 자

4-1-44~2 제4편 부속기관

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④ 직원, 한의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위탁) 보건진료소 산하 의원의 운영은 부속 한방병원에 위탁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총장이,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고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한의대학장, 한방병원장, 보건진료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9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0조(회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